



질의  
회신

## 분야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여부 관련

-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분야

###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거 지역 내에 단독주택 허가 시에도 지목변경이 수반되거나, 50cm이상 절·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민이 영농의 편의를 위해 전답을 개량하거나, 농로 개설 시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받는 사업에 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질의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나,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답변

행정계획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검토·협의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은 사업시행단계인 실시계획단계에서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협의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에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질의

00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시기는?

### 답변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질의

2004년부터 농림부 주관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법”) 제38조와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에 의한 농촌마을중

합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경관정비, 소득증대사업 등을 주 테마로 2~3개 법 정리를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국지적이고 소규모인 10여개 사업을 70억 상당의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기본계획 수립 후『농어촌정비법』제32조에 해당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은 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행정계획에 의한 협의과정은 없으며, 시행계획 수립 시 각 사업별로 규모에 따라 개발사업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각 지방환경청의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의 경우는 자연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에 제시된『농어촌정비법』제27조와 제31조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및 동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 각각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계획에 의한 협의 없이 시행계획 수립 시 개발사업단계에서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한다면, 사업의 규모(면적, 길이 등)와는 상관없는지? 또, 단순한 사업(예를 들어, 돌담을 정비하고 경관개선을 위한 꽃길을 조성하는 등 자연재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도『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 변**

『농어촌정비법』제27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은 행정계획단계로서 개발계획 수립 시에 자연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은 개발사업단계로서 시행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저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고 있음.

『농어촌정비법』제31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규모

(면적, 길이 등)는 부지면적 5,000m<sup>2</sup> 이상이거나 길이 2km 이상인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 의**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농어촌정비법』제27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및 동법 제31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고 도지사로부터 사업대상지 선정 및 확정 통보 후 사업을 시행할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도지사에게 협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지?

**답 변**

도지사로부터 사업대상지 선정 및 확정 통보된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시행 전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

**질 의**

도시계획시설(학교)로서 세부시설변경 결정을 받을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지 않았고, 부지면적은 증감이 없으며 건축물 위치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 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라도 증가되는 대상규모가 45,000m<sup>2</sup>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방재정보광장

**질의 회신**

**질의**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사 막바지 시점인데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다 보니 약간의 면적(11m<sup>2</sup>)이 증가하게 되었음. 실시계획 인가는 2004년에 받은 상태이며, 이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등의 인가(변경) 전에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협의하는 제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라도 증가되는 대상규모가 45,000m<sup>2</sup>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학교부지면적 증감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학교 시설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세부시설 변경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세부시설변경 결정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인지?

1998. 1. 15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2003. 6. 17 도시계획시설(학교 : 세부시설) 결정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

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득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협의를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에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상기 개발사업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개발사업을 의미하는지?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니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전허가 등의 금지”에 개발사업의 의미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을 말함.

**질의**

본 사업은 ○○도 지역 골프장 조성사업이며,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2004년 10월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서를 해당 군에 제출한 상태이나, 입지 등의 문제로 금회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종전의 상태를 유지한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음. 이렇듯 종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사업을 재추진 할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참고로 본 사업은 해당 군에서 국토이용계획입안을 위한 공고절차는 거쳤으나, ○○도에 입안되지 않았음.

**답 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시행일('05.8.17)이전 인'04년 10월에『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절차 이행중인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참고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 의**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협의 중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건축물이므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항목은『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를 항목이 있으며 초·중등학교는『고등교육법』이 아닌『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바 초등학교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건축물인지?

**답 변**

학교설립 인가와 관련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 시에만 해당됨. 단, 도시계획시설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 의**

홍수 시 농경지 및 가옥이 상습 침수되어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항구적인 수방대책으로 배수 펌프장 및 유입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임.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우수지 및 유입수로 약40,000㎡를 방수설비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중에 있음. 본 설계를 수행하면서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여러 차례 중간보고회와 전문가 자문을 득하였음.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답 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는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수립·확정·허가·인가·승인·결정 등을 할 시에 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의하는 제도로서 방재시설의 경우에도 해당됨.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 의**

최초 사업을 시행하기 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는 나와 있는데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 혹은 기하구조변경 등 변경 건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임. 그 이후 사업 시행 중 경미한 사항(중단경사 변경 및 도로 횡단 통로박스 통과)에 대해 변경을 할 때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 변**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해당법령에서 변경사항을 규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

방재정보광장

**질의 회신**

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등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실시계획인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포함)를 득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되어 관련 개별법에 의거 의법(고발)조치되었음. 처벌 조치되고 실시계획인가를 추진(불법에 대한 처벌 조치하고 관련법 협의 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허가)을 받고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협의 하였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협의가 되지 않고 있음.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업시행청과 협의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안이라고 사료됨.

**질의**

지난 1961년부터 현재까지 40년이 넘게 초등학교로 이용되어 온 부지가 있음. 현재 다른 공공기관 소유로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해당 소유기관에서 부지를 학교시설로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완료한다면 무상임대 및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미 오

랫동안 사용되어 온 소규모 초등학교 시설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학교부지 현황**

- 총면적 : 16,936㎡
-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 완료 면적 : 11,098㎡
-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 추가 면적 : 5,838㎡

**답변**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에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 있으며, 변경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본 사업은 개간사업으로 현재 임야로 이루어진 약 80,000㎡의 토지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이용하고자 함. 과수원의 특성상 과도한 절·성토는 발생하지 않고 최대한 현재의 지형을 이용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곳으로 이런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농어촌정비법』규정에 의한 농지확대개발사업(개간 등)일 경우에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에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대지(학교용지)는 학교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4항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중 『학

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에 해당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답 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 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으로 조성계획 결정전 받기로 되어있음. 조성계획 결정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에 다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 변**

같은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 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원지로 지정되어 운영중이며, 부지면적은 총 1,200만㎡로 본 유원지 내에는 자동차경주장, 유원시설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06. 3월 유원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관할행정기관에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금회 다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진행하고자 함.

1) '06. 3월 유원지 1,200만㎡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

의를 받은 후, 금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고자 하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2) 유원지 1,200만㎡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지역에서 즉, 1,200만㎡ 부지 내에 운영중인 자동차 경주장 부지면적이 267천㎡로 이중 조경지역 일부를 자동차 경주장 지역에서 제척(103천㎡)하여 자동차 경주장 부지면적이 164천㎡로 변경되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고자 함. 유원지 1,200만㎡ 부지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유원지내 자동차 경주장 부지면적을 변경하였을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 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또한, 변경 인가·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 의**

2004년 10월 공원조성을 완료한 어린이공원임. 기존 건물 2층에 휴게실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공원조성계획 변경(건축연면적증가)을 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함. 이때 기존 건물 2층에 휴게실을 증축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방재정보광장

**질의 회신**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의 경우는 계획 결정전에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 이더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진행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로서 협의매수에 실패한 토지 등의 수용절차를 위해 확정측량을 하였을 경우 전체 면적 및 위치의 변화는 없으나 지번별 편입면적 변동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2003년 모든 사업(폐기물처리시설)이 종료되었고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을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1) 변경사항 : 시설부지 면적변경(83,613㎡ ⇒ 86,610㎡)
- 2) 변경사유 : 사업시행 중 지형사정으로 인한 비탈

면 등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 확정측량 결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정정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시에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림.  
공원 현황

- 공원조성계획 결정 : 1991.1.23, 공원면적 : 10,000㎡(시설면적 3,000㎡, 녹지면적 7,000㎡)
  - '07. 7월 시설·녹지면적 변경없이 광장 8.12㎡와 파고라 75㎡를 야외무대 83.12㎡로 변경 설치하고자 함.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나 변경사항으로 동법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협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 2) 동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규)를 받을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할 경우 공원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인가신청을 받는 지역만 검토하여야 하는지?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대상면적이 됨.

### 질의

『농어촌정비법』제6조제2항에 의해 개간대상지 선정 승인을 득하고 동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행인가를 득해야만 시행할 수 있음.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득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답변

『농어촌정비법』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수립,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에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정비법』제6조제2항에 따른 개간대상지 선정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지 않아도 됨.

### 질의

우리시에서는 도로개설(L=1.4km, B=35.5m) 계획이 있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할 예정임. 위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되었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에 다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답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협의하는 제도로써 행정계획단계와 개발사업단계에서 각각 협의를 하여야 함.

따라서, 행정계획단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와 개발사업단계인 동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 질의

'05. 4월경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었으며, '07. 5월경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사유 : 부지면적 5%이내의 변경)에 해당되어 사전협의를 득하지 않았으며, '07. 9월 실시계획 인가 변경 신청(사유 : 지적공사의 구역확정측량 결과에 의해 구역 경계의 오차 정정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이 된 사항으로 본 사업의 계획은 변경 없이 구역변경만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